

펀드투자권유 전문인력 투자자보호

Lesson

집합투자관련 법규 3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5. 사모집합투자기구

학습이정표

• • 학습목표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성과보수제한, 의결권행사제한, 파생상품·부동산운용의 특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및 기준가격 산정방법,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 •

-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관련 법규 3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펀드운용 관련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법 제85조)

- ① 금융투자상품 기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수·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것을 집합투자업자 자기계산으로 매수·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예외 : 허용행위) i)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ii)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예외 : 허용행위) i)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ii)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영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 iii)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 ③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해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④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⑤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⑥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해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⑦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⑧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⑨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⑩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집합투자관련 법규 3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펀드운용 관련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법 제85조)

- ⑪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⑫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 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⑭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⑮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집합투자관련 법규 3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2. 성과보수의 제한

- 1) 원칙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음
- 2) 예외 : ①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② 공모집합투자기구더라도 투자자보호 및 건전 거래질서 저해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음
- 3)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① 성과보수가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 ②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 ③ 운용성과가 기준지표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일정성과가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않을 것
- ④ 금융위가 정하는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로만 구성될 것
- ⑤ 최소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폐쇄형펀드 형태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을 것

4)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 :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의 사항* 기재의무

- *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 4. 기준지표(법 제86조제1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 7.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 8.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집합투자관련 법규 3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3. 의결권행사 제한등

1) 의결권행사 주체 : 집합투자업자

2) 의결권행사

가) 원칙 :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도록 충실한 의결권 행사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여야 함(법 제87조제1항)

나) 예외 : 중립적 의결권행사(shadow voting)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적으로 의결권행사(shadow voting) 하여야 함(법 제87조제2항)

<중립적 의결권행사(shadow voting) 사유>

- ① 집합투자업자(그 이해관계인 및 사실상 지배자 포함)가 주식 발행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②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관계 혹은 사실상 지배자관계에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 예외에 대한 예외 : 충실한 의결권 행사

○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주요의결사항')에 대해 중립투표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 의결권 행사 가능(법 제87조제3항본문)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 방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법 제87조제3항단서)

①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집합투자관련 법규 3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 ② 집합투자업자가 동일종목 투자한도 10%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3) 의결권행사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는 동일종목 투자한도,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한도,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한도 등을 위반하여 초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법 제87조제4항)

4) 의결권 교차행사의 금지

-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의결권행사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 금지(법 제87조제5항)

5) 주식처분명령

-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행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법 제87조제6항)

6) 의결권행사 내용 등의 영업보고서 기록유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함(법 제87조제7항 및 영 제90조)

*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는 주식이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주식발행법인

집합투자관련 법규 3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4. 자산운용에 관한 공시

1)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해야 함
 -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공시의 방법(전자우편 제외)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작성·교부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2) 수시공시

가) 수시공시 사유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법 제89조제1항)

- | |
|---|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 ⑤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 수시공시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해야 함
 - 그 방법으로는 ①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②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③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집합투자관련 법규 3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가) 장부서류의 열람

- 투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포함)에게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 (열람청구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에 응해야 함

나) 집합투자규약의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함

4)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가) 정기보고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분기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함

나) 수시보고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금융위 및 금융투자협회에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운용실적 비교공시

- 금융투자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

집합투자관련 법규 3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5. 파생상품 및 부동산 운용에 관한 특례

1) 파생상품 운용 특례

가) 파생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운용 시 계약금액, 위험지표 공시의무

* 집합투자업자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계약금액, 위험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 이 경우 투자설명서에는 위험지표의 개요 및 위험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

나) 장외파생집합투자기구*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장외파생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에 신고

2) 부동산 운용 특례

가) 금전차입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금융기관, 보험회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 가능

- 자금의 차입한도 : i)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 ii)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부동산 가액의 70%

- 차입금 사용목적 : 차입금은 부동산 취득에만 사용해야 함

※ 집합투자자총회의 의결로 차입한도와 차입대상을 위와 달리할 수 있음

나) 금전대여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한도로 금전을 대여 가능

집합투자관련 법규 3

1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다) 취득 후 단기간 내 처분 제한

- (원칙 : 처분 제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제한(법 제81조 제1항제2호가목본문 및 영 제80조제7항)
- (예외 : 처분 가능)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함)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는 처분 가능(법 제81조제1항제2호가목단서 및 영 제80조제8항)

라) 개발사업 시행 전 토지처분 제한

- (원칙 : 처분 제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없는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사업 시행 전에 처분하는 것은 제한(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본문)
 - (예외 : 처분 가능) 펀드의 합병, 해지 또는 해산, 관련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허용(법 제81조제1항제2호나목단서 및 영 제80조제9항)

집합투자관련 법규 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 폐지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를 제외한 모든 집합투자기구가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

2)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투자대상 자산(집합투자기구 자산의 50%초과 투자자산)을 기준으로 증권집합투자기구·부동산집합투자기구·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5가지로 구분
 - 각 집합투자기구별 주요 투자대상 자산에 해당 기초자산 관련 파생상품을 포함시킴으로써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 종류 및 투자대상자산 규제

구 분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혼합자산펀드
증 권	○	○	○	○	○
파생상품	○	○	○	×	○
부 동 산	○	○	○	×	○
실물자산	○	○	○	×	○
특별자산	○	○	○	×	○

집합투자관련 법규 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1)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폐쇄형펀드)

가) 폐쇄형펀드 의무설립 사유

- 집합투자기구가 i) 부동산펀드, ii) 특별자산펀드, iii) 혼합자산펀드, vi) 펀드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부동산, 특별자산등)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에는 반드시 폐쇄형펀드로 설립

나)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등록

- 폐쇄형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함

*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상장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다) 펀드존속기간의 설정

-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폐쇄형으로 만들 수 있음

라)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① 폐쇄형펀드 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 요건

- 폐쇄형펀드는 i) 기존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ii) 이익분배금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iii)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 가능

② 발행가격 : 기준가격과 시장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음

마) 적용특례

- 폐쇄형펀드는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법 238조)이 적용되지 않음(다만,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 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적용됨)

집합투자관련 법규 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 종류형집합투자기구(Class Fund)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Multiple-Class Fund)

가) 집합투자자총회

-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집합투자자만으로 총회개최 가능

나) 투자설명서

- 투자설명서에는 ①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②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의 금액, 부과방법 및 부과기준, ③ 투자자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전환절차, 전환조건, 전환방법 등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다) 비용부담 등

-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로 같도록 해야 함

- 판매회사가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 간의 차이를 설명해야 함

3) 전환형집합투자기구(Umbrella Fund)

-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에 의하여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집합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Umbrella Fund)
-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미리 전환가능한 것으로 정해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때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

4) 모자형집합투자기구(Master-Feeder Fund)

-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로는 ① 자펀드가 모펀드 외의 다른 펀드에 투자하지 말 것, ②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③ 자펀드 외의 자가 모펀드에 투자하지 말 것 등이 있음

집합투자관련 법규 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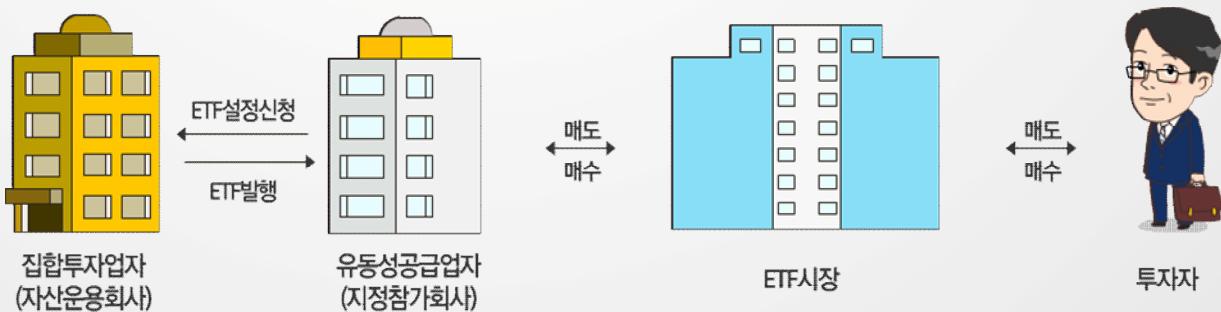
가) ETF의 정의

- ETF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나) ETF 요건

-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 ② 당해 ETF의 환매가 허용될 것
- ③ 당해 ETF가 집합투자기구 설립·설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장될 것

다) ETF 시장의 구조



- ETF 시장은 ETF가 발행/환매되는 발행시장과 ETF 증권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구분

- 발행시장에서 ETF는 대량의 단위(CU: Creation Unit)로 설정 또는 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투자자만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을 원하는 경우) 투자는 지정참가회사(AP)로 지정된 투자매매 및 증개업자를 경유해 ETF 설정에 필요한 주식バス켓을 납입하고 ETF를 인수하며, 환매 시는 반대로 ETF를 납입하고 주식バス켓을 인수함
- ETF는 신주발행 요청을 받아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거나 환매에 응해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날의 '납부자산구성내역(PDF)'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주식과 같은 '현물'로 설정·신주발행/환매가 가능

집합투자관련 법규 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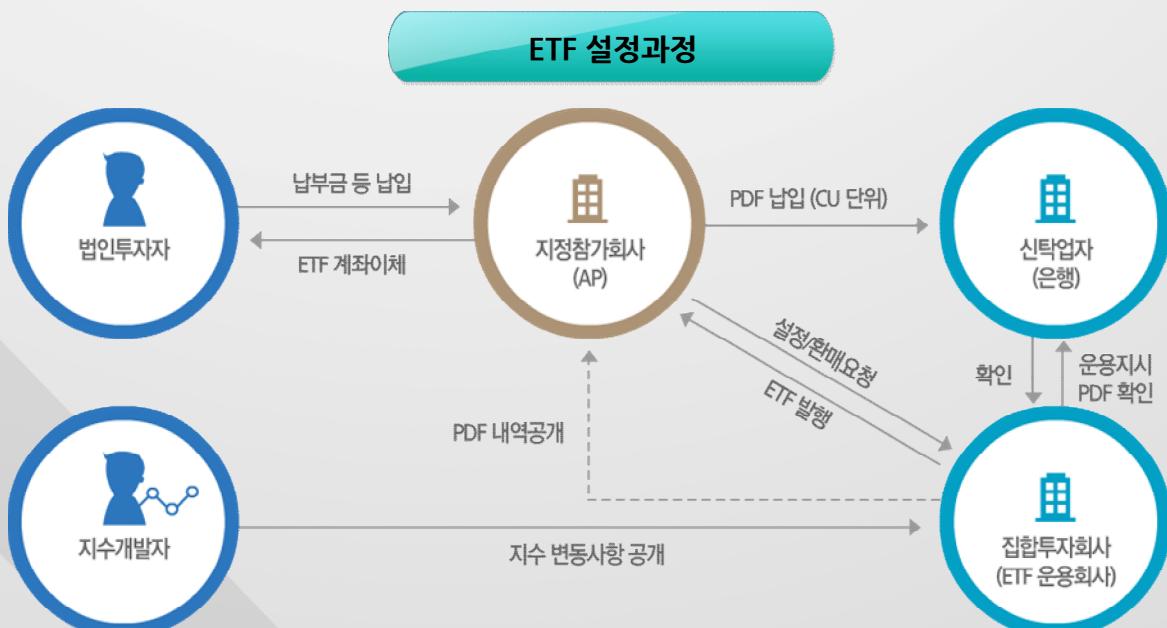
라) ETF 설정·설립 및 환매

- ① ETF 설정·설립 :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증권을 납입 받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에 ETF 설정·설립을 요청하면, 집합투자업자는 ETF를 설립·설정



② ETF 설정단위(CU) 및 설정과정

- (ETF 설정단위[CU]) ETF의 설정·신주발행 시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라는 것이 적용
* CU란 설정·신주발행에 필요한 최소수량으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단위
- (설정단위 존재 이유) ETF의 지수 추종이라는 투자목적과 관계가 있는바, i)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규모를 고려한 것이고, ii) 설정·신주발행/환매 단위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설정·신주발행/환매가 과도하게 자주 발생하는 것을 제한해 ETF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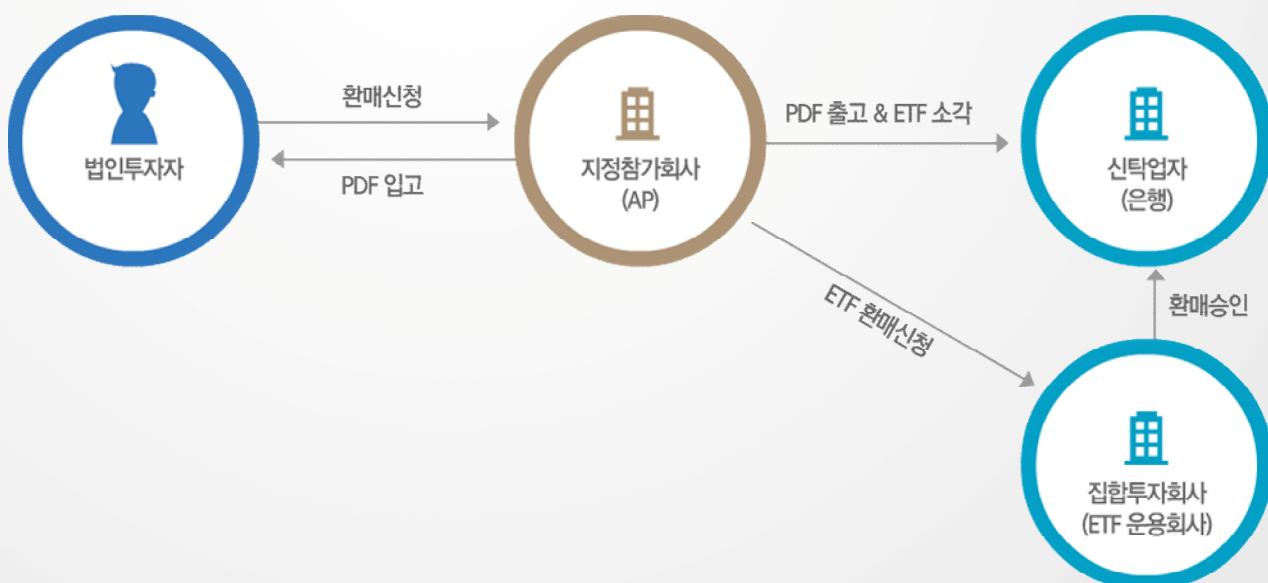


집합투자관련 법규 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③ ETF 환매 : ETF 투자는 ETF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 단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가능
- 환매청구를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ETF를 운용하는 집합투사업자에게 자체 없이 환매를 청구해야 함
 - 집합투사업자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의 ETF 운용이 종료된 후 그 ETF의 재산을 기준으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환매분에 상당하는 ETF 증권은 일부 환매 또는 일부 소각에 의한 방법으로 소멸



집합투자관련 법규 3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 평가제도

-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재산에 대한 평가를 시가·공정가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되
 -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따른 효율적인 재산평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2)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가) 펀드재산 평가방법 원칙 : 시가평가*

*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시장이 발표하는 가격(예외적으로 PEF가 경영권 지배목적으로 지분증권 투자 시에는 취득가격, 상장채권 · 해외상장채권의 경우 2이상의 채권평가사가 제공하는 가격 등)

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 공정가액*

-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사·회계법인·신용평가사·감정평가법인·인수업자 등의 평가가격, 환율, 펀드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평가한 가격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③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26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준용한다.

집합투자관련 법규 3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 ① 장부가격 평가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평가 가능
 - ② 시가괴리율 :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 및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
- 시가괴리율이 ±5%인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i)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ii)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iii) 준법감시인, iv)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마)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제정

- ①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기준 마련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
-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 이사회 보고의무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함)에 보고하여야 함

바)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신탁업자의 확인 등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자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함

집합투자관련 법규 3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2.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1) 기준가격 산정방법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시가가 있는 경우는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는 공정가액으로 평가]으로 계산한 것을 말함)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기준가격 공고·게시의무

가) 원칙 : 기준가격 매일 공고·게시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함

나) 예외 : 집합투자규약에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기준가격 산정 오류 변경 공고·게시

가) 기준가격 산정 오류 시 기준가격 변경 후 재공고·게시의무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 기준가격을 자체 없이 변경한 후에 재공고·게시(최초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 기준가격의 차이가 최초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외)

나) 기준가격 변경 시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

4) 기준가격 변경사실의 보고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기준가격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 기준가격 변경을 보고하는 경우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을 21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변경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집합투자관련 법규 3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3.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함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에게 위탁 가능.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을 제·개정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

2) 회계감사 적용면제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계약기간 종료·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존속기간 만료·해산의 경우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i)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와 ii)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 경우로서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감사의 적용을 면제

3) 회계감사인의 선임·교체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교체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교체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함)를 받아야 하며,
 -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집합투자관련 법규 3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4.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

1) 이익금의 분배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함
-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2) 이익금 분배의 유보

-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 가능

3) 이익금의 초과분배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 초과 금전 분배 가능
-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음
-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함

집합투자관련 법규 3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5.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1)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 금융위 보고

○ 투자회사는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투자회사는 그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원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순자산액 미달상태 계속의 경우 등록 취소

○ 금융위원회는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게 된 투자회사에 대하여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순자산액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함

집합투자관련 법규 3

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1. 신탁업자의 업무 제한 등

-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에 한함) 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됨(법 제246조제1항)

1)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관리(법 제246조제2항전단)
 -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함(법 제246조제2항후단)

2) 집합투자재산의 집합투자기구별 예탁결제원 예탁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제외) 등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법 제246조제3항본문)

3)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증권(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제외] 등을 포함)의 취득·처분 등의 지시 또는 보관·관리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증권의 인수·인도와 대금의 지급·수령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행

4) 집합투자재산과 다른 위탁재산과 거래 금지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안됨(법 제246조제5항본문)
 -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능(영 제268조제4항)

집합투자관련 법규 3

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2.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1)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 감시의무

-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
-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
 -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

2)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운용행위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의신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운용행위 시정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i)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 ii)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3)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시정요구 미이행 보고 및 공시

-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운용행위 시정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 i)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ii)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iii)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7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집합투자관련 법규 3

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4)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i)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ii)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iii)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iv)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v)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vi)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vii)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
- 신탁업자는 확인사항을 자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자체 없이 보고

5) 기준가격 편차

- 신탁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산정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며,
- 그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

집합투자관련 법규 3

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i)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ii)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iii)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iv)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v)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vi)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vii)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다만,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탁업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
 -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함(영 제270조제3항본문)
 -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영 제270조제3항단서)
-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신탁업자가 부담

집합투자관련 법규 3

5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3448호, 2015.7.24일 공포) 및 하위 법령*이 2015.10.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

-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600호),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0호), ③ 금융투자업규정(제2015-35호)

(1)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종전)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의 4종류로 구분

** 기존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통합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명명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① 전문투자자 ② 일반투자자로서 일정 금액(현행 : 헤지펀드 5억 원, PEF 10억 원 → 개선 : 1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자

◦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를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설정

종전

개선

구 分	종전 적격투자자
일반사모펀드	제한 없음
헤지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투자자(일부 제외) ·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법인 등
PEF (기업재무안정 P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투자자(일부 제외) · 10억 원 이상 투자자(개인) · 20억 원 이상 투자자(법인)

구 分	개선 적격투자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전문투자자* · 레버리지 200%이하 : 1억 원 이상 투자자 · 레버리지 200%초과 : 3억 원 이상 투자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전문투자자 · 3억 원 이상 투자자 * GP임원·운용역은 1억 원

* 모든 금융회사(외국 포함), 금융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집합투자관련 법규 3

5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대효과)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화하여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사모 펀드 시장을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극대화

3) 사모펀드 진입규제 완화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제로 전환

종전			개선		
기준	인가·등록단위	진입규제(자기자본)	기준	인가·등록단위	진입규제
자산운용업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록 (1.5~27억 원)	i)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록 (1.5~20억 원 이하)
	집합투자업	인가		사모 집합투자업 (헤지펀드)	등록 (20억 원)
	단종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 증권: 40억 원 - 부동산: 20억 원 - 특자: 20억 원		공모 집합투자업	인가 (40억 원)
	집합투자업	인가 - 혼합: 60억 원 - 종합: 80억 원	ii)	단종 (증권, 실물)	
	혼합 (헤지펀드)	종합		공모 집합투자업	등록 (80억 원)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

* 심사요건 중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가 없어,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진입 가능

〈등록 요건〉

- ① 자기자본 : 20억 원
* 종전 헤지펀드(60억 원) 및 모든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 원)보다 낮음

- ② 전문인력 : 최소 3인* 이상
* 3인 중 1인은 공모펀드 운용역, 2인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역

- ③ 물적 설비 요건 :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하게 설정하되, 외부 위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진입 장벽을 완화

집합투자관련 법규 3

5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 요건 완화

- (종전) 사모펀드 운용인력 요건은 공모펀드 운용인력*으로서 2년 이상의 운용 경력을 총족 후 협회의 해지펀드 운용 인력 교육을 이수한자가 가능

- * ① 금융회사, 연기금 등(외국 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 + 2년 이상 운용업무에 종사,
- ② 공인회계사 + 2년 이상 운용업무에 종사, ③ 협회 시험 통과자

- (개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해지펀드) 운용인력을 금융회사 등(외국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개선*

- * 금융회사 등 근무 경력만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2년) 요건은 폐지

○ 이해상충방지장치 : 펀드 운용인력 겸직·정보교류 차단 장치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 (종전) 해지펀드 운용인력은 여타 펀드(공모, 일반 사모), 일임, 신탁 재산 운용 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운용 관련 정보를 다른 운용역과 공유하는 것도 금지

- * 공모펀드·일반사모펀드·일임·신탁 재산운용역은 겸직 및 정보 공유 가능

- (개선) 해외사례, 여타 이해상충방지장치 등을 감안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 폐지

4) 사모펀드 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① (설립)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 * (현행) 일반사모펀드 : 사전등록 // 해지펀드 : 사후 보고 // PEF : 등록

② (운용)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개선

-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현행)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개선) 한 펀드 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허용 등

-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현행) 다중 SPC 설립 금지, 자산 5% 내 증권투자 허용 등 → (개선) 복층 SPC 설립 허용,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

집합투자관련 법규 3

5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판매) 소수 전문가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사모펀드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1을 면제하고 투자광고2를 허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운용상품 직접 판매3를 허용

1.(종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과

2.(종전) 광고 전면 금지 // 3.(종전)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필요

※ (기대효과) 한 펀드 내에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이 편입되고, 운용규제가 완화되어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용전략이 사용 가능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5)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활성화 지원

①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영 규제 완화

※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PEF를 제외한 금융·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 : 기업집단 계열사 자산의 합계액(다만, 금융·보험 계열사는 Max[자본금, 자본총액]을 적용)

-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배제되는 바,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

* ①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허용

②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 PEF LP에 대해서는 면제

③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 내 처분의무 등 → 원칙 7년 + 3년 추가 가능

② PEF가 설립한 SPC* 주주로 전략적 투자자 참여를 허용하여 M&A 또는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극대화

* 대부분의 PEF는 차입을 위하여 SPC를 설립(PEF 자체는 차입이 제한)

- (종전)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기업 경영 참여)도 PEF를 통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SPC를 통한 투자는 금지

- (개선) M&A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SPC를 통한 투자를 허용

집합투자관련 법규 3

5

사모집합투자기구

- * PEF 회수 가능성 제고, 투자대상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 및 전문 경영진과의 협업 등을 추구하는 최근 PEF 투자 경향을 감안
- * 다만, 재무적 투자자가 규제회피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로 우회하여 SPC에 투자하는 행위 등 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

③ M&A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 LP 출자 관련 계열사 참여 제한 규제 완화

- (종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는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의 출자 합계가 30% 이내로 제한

- (개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PEF라도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운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한도 규제를 면제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의 목적은 국내 경제력 집중 방지인 점을 감안

④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 완화

- 바이아웃(Buy-out)투자라는 주목적 투자 규제는 유지하되, 여타 운용규제는 주목적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종 전	개 선
①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 방법 제한 -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권기초파생상품만을 활용해야 함	- 위험 헤지를 위한 목적이면 제한 없이 허용
②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금전채권 투자 제한 - 구조조정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 구조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투자대상기업의 부동산·금전채권 투자 허용
③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 국내자산에 5% 이상 투자한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 금지	- 국내자산에 30% 이상 투자한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 금지
④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6개월 이내 투자 개시 의무	- 사적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지

집합투자관련 법규 3

5

사모집합투자기구

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복층의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복층 SPC를 통해 기업 인수 시 인수 금융 확대* 등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와 SPC · 투자대상기업간 합병** 등을 용이하게 진행 가능

* 은행은 통상 SPC 자기자본의 50% 정도로 인수금융 제공 → 다중 SPC는 SPC별 차입이 가능해 인수금융 규모 확대 가능(단, 총 차입한도 300%는 동일하게 유지)

** 다중 SPC를 사용할 경우 SPC와 투자기업간 합병이 용이하고 잔존 SPC를 통해 추가자금 조달 등이 가능한 측면

※ (기대효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M&A를 활성화하고 금융의 실물부문에 대한 직접 자금공급을 보다 원활화

6) 사모펀드 자금차입 등에 대한 감독 강화

-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 (종전)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하여, 차입한도 규제의 실효성 저하

7)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8)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 완화

① 전담증개(PBS)부서에 대한 사모펀드 Seeding 투자 허용

- (종전)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인해 헤지펀드에 대한 초기투자 업무를 헤지펀드 사업과 직접 관련된 PBS사업부에서 Seeding투자 금지(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만 수행)

※ 미국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는 PBS 업무의 핵심이며 프라임브로커의 주요 수익 창출원

- (개선) 고유재산운용부서뿐만 아니라 PBS사업부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전담증개업무 부서가 초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설정·설립부터 성장까지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집합투자관련 법규 3

5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기업금융부서에 대한 PEF LP 투자 허용

- (종전) 기업금융부서가 PEF GP로서 고유재산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에도, LP로서 투자하는 행위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인해 금지
- (개선) 기업금융부서에서도 LP로서 PEF에 투자하는 업무를 허용하여 증권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③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 허용

-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장치에 대한 세부 등록 요건을 마련*하여 조속히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 * 금감원 및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록 희망 증권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

※ (기대효과)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운용·투자를 보다 활성화하여 사모펀드 시장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

(2) 기대효과 : 사모펀드 활성화

1) 시중 부동자금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투자기회 제공

-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 사모펀드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에 적합

2) 사모펀드 규제 정비와 감독 강화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 규율체계 재정립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사후 감독 강화를 통해 계열사 지원, 독점력 남용 등 부작용도 최소화

3)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통해 외국자본 대항마 육성

- 규제가 전혀 없는 외국 사모펀드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국내 자본 결집이 어려워 수익성 높은 기회를 외국 자본이 독점하고,
 - 국내 연기금 등의 운용규제가 자유로운 외국계 펀드를 선호하여 국내토종 운용사가 육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



정리하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성과보수를 받을 수는 없으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와 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는 동일종목 투자한도,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한도,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한도 등을 위반하여 초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MMF를 제외한 모든 집합투자기구가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이 가능하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각 집합투자기구별 주요 투자대상자산에 해당 기초자산 관련 파생상품을 포함시킴으로써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